경상북도

도보
www.gb.go.kr

선람	기관(부서)의 장

제6278호 2018년 11월 5일(월)

경 상 북 도

■ 조 례

○ 경상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107호) ····· 6

회람								

발행인:경상북도지사 편집:대변인실

○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115호) ····· 8

■ 규 칙

○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경상북도 규칙 제2908호) ····· 17

○ 경상북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경상북도 규칙 제2909호) ····· 18

■ 고 시

○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허가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8 - 332호) ····· 26

○ 2018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변경)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8-333호) ····· 27

■ 공 고

○ 측량업 등록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18-1402호) ····· 30

○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18 - 1404호) ····· 31

○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18 - 1405호) ····· 33

○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18 - 1406호) ····· 35

○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18-1409호) ····· 37

시 군

■ 고 시

○ 안동 도시계획시설(도축장, 시장)사업 시행자지정 변경 고시
(안동시 고시 제2018-145호) ····· 40

○ 구미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구미시 고시 제2018 - 271호) ····· 51

■ 공 고

○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군위군 공고 제2018-638호) ····· 55

○ 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
(성주군 공고 제2018 - 804호) ····· 57

○ 울진 도시공원(어린이공원 : 부구제2공원) 공원조성계획(안) 공람 공고
(울진군 공고 제2018 - 1525호) ····· 59

기 타

■ 규 칙

○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경상북도교육청 규칙 제760호) ····· 63

○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
(경상북도교육청 규칙 제761호) ····· 66

○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경상북도교육청 규칙 제762호) ····· 70

○ 경상북도 각급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
(경상북도교육청 규칙 제763호) ····· 73

○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경상북도교육청 규칙 제764호) ····· 79

■ 공 고

○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공표
(안동소방서 공고 제2018-12호) ····· 89

○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상주소방서 공고 제2018 - 19호) ····· 91

○ 소방안전관리자 법정실무교육 미이수자 업무정지
(울진소방서 공고 2018 - 12호) ····· 93

◈◈◈

제30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2018년 11월 5일

경상북도 조례 제4107호

경상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경상북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혁신도시발전위원회”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경상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경상북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대학·연구소”를 “혁신도시 내 대학·연구소”로 한다.

제2조제5호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조제11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11호) 중 “중앙정부”를 “정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혁신도시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제2조제12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12호) 중 “그 밖의”를 “그 밖에”로, “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중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한다”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2018년 11월 5일

경상북도조례 제4115호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명칭과 관계없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소관 업무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 란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 및 운영하는 위원회

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설치요건) 교육감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제5조(설치절차)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 설치계획을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 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 구성 근거, 타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바로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교육감은 각종 위원회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또는 자치법규 등에 규정된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및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
4. 교육감이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동일인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2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위원회의 성격상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⑤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장은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공개이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0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권

자가 공개를 요구할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정비)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위원회의 통합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교육감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제11조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경상북도교육ㆍ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청렴서약서(제6조제5항 관련)

소 속 :

직 위 :

성 명 :

○ 위 본인은 경상북도교육청 (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인)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위원회 및 다른 법령·조례와의 관계 규정

○ 위원회 설치요건 및 설치절차 규정

○ 위원 구성과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해제 사유 규정

○ 위원회 회의 절차 및 출석회의 예외 사유 명시

○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 위원회 정비 및 수당·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존속기한 명시

○ 위원회 수당·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2018년 11월 5일

경상북도 규칙 제2908호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1천만원이하”를 “2천만원 이하”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준용) 기금의 출납 및 운용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2018년 11월 5일

경상북도 규칙 제2909호

경상북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경상북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범위) 「경상북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조례 제3조에 따른 진료비(약제비 포함)의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지사”를 각각 “시장·군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도지사”를 “시장·군수”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9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8. 11. 5.〉

<table>
<tr><td colspan="5">잠수어업인 진료기관 지정 신청서</td><td>처리기간
3일</td></tr>
<tr><td colspan="2">진료기관명</td><td></td><td>종 별</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소 재 지</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진 료 과 목</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개설신고일자</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개설자
(대표자)</td><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성 명</td><td></td><td>연락처</td><td colspan="2"></td></tr>
</table>

「경상북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잠수어업인 진료기관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

[첨부서류]

1. 의료기관개설 신고필증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8. 11. 5.〉

<table>
<tr><td colspan="3">잠수어업인 진료기관 변경 신청서</td><td>처리기간
3일</td></tr>
<tr><td>진료기관명</td><td colspan="3"></td></tr>
<tr><td>소 재 지</td><td colspan="3"></td></tr>
<tr><td>대 표 자</td><td colspan="3"></td></tr>
<tr><td>지정 일자</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변경하고자하는 사 항</td><td>당 초</td><td colspan="2">변 경</td></tr>
<tr><td></td><td colspan="2"></td></tr>
<tr><td>변경의 사유</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4">「경상북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지정내용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td></tr>
<tr><td colspan="4">〔첨부서류〕
1. 변경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
2.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서 1부</td></tr>
</table>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8. 11. 5.〉

<table>
<tr><td colspan="5">진료비 청구서(　　년도　월분)</td><td>처리기간
15일</td></tr>
<tr><td rowspan="4">진료기관</td><td>상　호</td><td></td><td>사업자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소 재 지</td><td colspan="4"></td></tr>
<tr><td>대 표 자</td><td colspan="4"></td></tr>
<tr><td>전화번호</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진료현황</td><td colspan="2">진료인원</td><td>진료건수</td><td colspan="2">일반급여(본인부담금)
청구액</td></tr>
<tr><td colspan="2">명</td><td>건</td><td colspan="2">원</td></tr>
<tr><td>진료비지급
계좌번호</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6">「경상북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20　년 월분 잠수어업인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　병(의)원장　(인)

귀하</td></tr>
<tr><td colspan="6">[첨부서류]
진료비 내역서(별지 제5호 서식) 1부</td></tr>
</table>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18. 11. 5.〉

<table>
<tr><td colspan="6">잠수어업인증 발급 신청서</td><td>처리기간
2일</td></tr>
<tr><td rowspan="3">신청인</td><td>성 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d>성별</td><td>남·여</td></tr>
<tr><td>주 소</td><td colspan="5">(전화:)</td></tr>
<tr><td>잠수경력</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8">어업허가(신고)
및 고용현황</td><td>어업의 종류 및
허가(신고)번호</td><td colspan="5"></td></tr>
<tr><td>어 선 명</td><td colspan="5"></td></tr>
<tr><td>어선번호</td><td colspan="5"></td></tr>
<tr><td>총 톤 수</td><td colspan="5"></td></tr>
<tr><td>고용기간</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4">고용확인자
(근해잠수어업인)</td><td>고용업체
(고용자)</td><td colspan="4"></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확 인 자
성 명</td><td colspan="4">(인)</td></tr>
<tr><td>연 락 처</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7">「경상북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잠수어업인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td></tr>
<tr><td colspan="7">[첨부서류]
1. 잠수어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 근해잠수어업인 고용계약서 또는 의료보험카드 사본 등 근해잠수어업인 고용관계 확인 서류 1부
※ 고용자 확인은 근해잠수기어업 종사자만 작성합니다.</td></tr>
</table>

[별지 제9호 서식]〈개정 2018. 11. 5.〉

<table>
<tr><td colspan="4">잠수어업인증 재발급 신청서</td><td>처리기간
2일</td></tr>
<tr><td rowspan="3">신청인</td><td>성 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연 락 처</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잠수어업인증 번호</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분실(훼손)일시</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분실(훼손)사유</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5">「경상북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잠수어업인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td></tr>
<tr><td colspan="5">[첨부서류]
잠수어업인증이 훼손된 때에는 그 잠수어업인증</td></tr>
</table>

◈◈◈

경상북도 고시 제2018 - 332호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8. 11. 5.

경 상 북 도 지 사

하천명	점용 목적	사업개요 및 점용면적	위 치	점 용 자		점용기간
				주 소	성 명	
지방 하천 (신천)	교 량 설 치	L=23.0m, B=5m 영구 640㎡	경북 성주군 용암면 마월리 1144번지 외 8필지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성주군수 (새마을체육과장)	영구:영구

경상북도 고시 제 2018 – 333호

2018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변경) 고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9조의2 제6항에 의거 2018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5일

경 상 북 도 지 사

□ **2018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변경)**

시군	단지명	단지 유형	지정계획 면적(천㎡)	산업용지 면적(천㎡)	사업시행자	비고
	10개소		3,447	2,131		
경주시	외동3일반산단	일반	110	70	정우산업개발(주) 외 5개사	
포항시	미남일반산단	일반	364	248	동진이엔지(주) 외 6개사	
고령군	송곡일반산단	일반	275	189	동명중공업 외 17개사	
성주군	동암일반산단	일반	175	129	(주)에스엔디 외 21개사	

시군	단지명	단지 유형	지정계획 면적(천㎡)	산업용지 면적(천㎡)	사업시행자	비고
칠곡군	칠곡농기계 자동차특화 일반산업단지	일반	519	316	(주)신일정공, (주)송정디앤씨 외 37개사	
칠곡군	칠곡송정일반 산단	일반	389	239	빠스카식자재 외 23개사	
경산시	경산화장품특 화단지	일반	149	88	경상북도개발공사	
영천시	영천미래형 첨단복합도시	일반	591	220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개발(주)	
상주시	상주일반산단	일반	411	282	상주시	
영천시	대창일반산단	일반	464	350	삼보스틸(주) 외 17개사	추가

◈◈◈

경상북도 공고 제2018-1402호

측량업 등록 공고

공간정보관리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5일

경 상 북 도 지 사

상 호 (대 표 자)	업 종 (사업자번호)	등록번호	소 재 지	등 록 일
㈜범일 토목설계공사 (양 승 철)	공공측량 (507-81-13437)	제03-001054호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13-2	2018.10.31.
(주)누리 지오시스템 (채경석, 박동남)	공공측량 (422-88-00697)	제03-001055호	경북 경산시 강변동로 80, 3층	2018.10.31.

경상북도 공고 제2018 - 1404호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발전)사업 양수인가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5일

경 상 북 도 지 사

- 다 음 -

○ 전기사업개요

- 허 가 번 호 : 2016-74호
- 사업의 내용 : 태양광
- 설 비 용 량 : 2,499.84㎾
- 허 가 일 자 : 2016년 10월 6일
- 설 치 장 소 : 경북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산4-3 외 1필지(토지)

○ **양수인가 내용**

구 분	양 도 자	양 수 자	비고
업 체 명	(경주1호태양광발전소)	㈜호연 (경주1호태양광발전소)	
대 표 자	김 석 진	신 상 혁	
주 소	경북 경산시 와촌면 시천1길 2-3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로 17번길 5, 706-2호 (신일동, 테크노시티빌딩)	
양수예정일	2018년 11월(양도·양수계약 : `18.08. .)		

경상북도 공고 제2018 - 1405호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발전)사업 양수인가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5일

경 상 북 도 지 사

- 다 음 -

○ 전기사업개요

- 허 가 번 호 : 2016-75호
- 사업의 내용 : 태양광
- 설 비 용 량 : 2,499.84㎾
- 허 가 일 자 : 2016년 10월 6일
- 설 치 장 소 : 경북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산4-3 외 5필지(토지)

○ **양수인가 내용**

구 분	양 도 자	양 수 자	비고
업 체 명	(경주2호태양광발전소)	㈜대강솔라 (경주2호태양광발전소)	
대 표 자	송 란 이	박 미 자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배울1로 13, 204동 30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로 17번길 5, 706-2호 (신일동, 테크노시티빌딩)	
양수예정일	2018년 11월(양도·양수계약 : `18.08. .)		

경상북도 공고 제2018 - 1406호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발전)사업 양수인가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5일

경 상 북 도 지 사

- 다 음 -

○ 전기사업개요

- 허 가 번 호 : 2016-76호
- 사업의 내용 : 태양광
- 설 비 용 량 : 2,499.84㎾
- 허 가 일 자 : 2016년 10월 6일
- 설 치 장 소 : 경북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산4-3 외 2필지(토지)

○ **양수인가 내용**

구 분	양 도 자	양 수 자	비고
업 체 명	(경주3호태양광발전소)	㈜용소솔라 (경주3호태양광발전소)	
대 표 자	문 종 헌	장 석 인	
주 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42, 109동 190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로 17번길 5, 706-2호 (신일동, 테크노시티빌딩)	
양수예정일	2018년 11월(양도·양수계약 : '18.08. .)		

경상북도 공고 제2018-1409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제1항에 따라 공고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 내용

가. 처분대상 및 처분내용

상 호	대표자	처분업종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행정처분
무아종합 건설㈜	송현숙	건축공사업 (16-0474)	경상북도 경주시 소금강로 45(용강동)	건설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세무서장이 같은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등록말소 (말소일 2018.12.3.)

나.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

다. 처분일자 : 2018. 10. 22.

2. 등록말소 대상업체는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등록말소 전일까지 경북도청(도시계획과)으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처분 이전에 이미 진행중인 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발주자의 계약해지 통보가 없으면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그 외 본 처분 이후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신규계약 체결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우리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11월 5일

경 상 북 도 지 사

◈◈◈

안동시 고시 제2018-145호

안동 도시계획시설(도축장, 시장)사업 시행자지정 변경 고시

안동시 고시 제2018-39호(2018.3.26.)로 시행자지정 고시된 안동시 서후면 대두서리 1070-5번지 외 39필지 상 안동 도시계획시설(도축장, 시장)사업 시행자지정 변경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5일

안 동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있음)

가. 당초 :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대두서리 1070-6번지 외 39필지

나. 변경 :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대두서리 1070-5번지 외 39필지(면적감소 등)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축장, 시장) 사업

나. 명 칭 : 안동봉화축협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공사

3. 변경 사유

○ 당초 시행자지정 이행조건인 사업부지 매입이 원활하지 못하여 실시계획인가 신청기일 연장에 따른 변경

○ 지적측량 및 토지분할에 따른 편입토지의 지번 정정 및 면적 변경

(당초 49,393㎡ → 변경 49,241㎡, 감152㎡)

4.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있음)

가. 당초

1) 사업시행면적 : 49,393㎡

2) 사업시행규모

○ 시설규모

- 본 동 : 도축장 및 공판장(지하1층/지상2층) 11,475.63㎡
- 부 속 동 : 소독터널(2개소) 53.62㎡, 세차장 210㎡, 경비실(2개소) 68㎡
- 기타시설 : 폐수처리장(지하1층/지상1층) 505㎡

○ 사업비 : 약 391.5억원

나. 변경

1) 사업시행면적 : 49,241㎡

2) 사업시행규모

○ 시설규모

- 본 동 : 도축장 및 공판장(지하1층/지상2층) 11,475.63㎡

- 부 속 동 : 소독터널(2개소) 53.62㎡, 세차장 210㎡, 경비실(2개소) 68㎡

- 기타시설 : 폐수처리장(지하1층/지상1층) 505㎡

○ 사업비 : 약 455억원

※ 실시계획 인가시 사업의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안동봉화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전형숙

나. 주 소 : 경상북도 안동시 제비원로 152(광석동)

6.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변경있음)

가. 당초 : 2018.09.30.

나. 변경 : 2019.05.31.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변경있음)

일련번호	구분	토지 소재지 읍면리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등기부상)	비고
	당초				55,239	49,393				
	변경				**49,241**	**49,241**				**감)152㎡**
1	당초	풍산읍 죽전리	323-4	천	4,401	4,149	공	안동시		**증)1㎡** 분할에 따른 지번 정정
	변경	**풍산읍 죽전리**	**323-10**	**천**	**4,150**	**4,150**	**안동시 광석1길 17**	**안동봉화 축산업 협동조합**		
2	당초	풍산읍 죽전리	323-8	천	50	50	공	안동시		
	변경	**풍산읍 죽전리**	**323-8**	**천**	**50**	**50**	**안동시 광석1길 17**	**안동봉화 축산업 협동조합**		
3	당초	풍산읍 죽전리	324	답	559	214	공	안동시		**감)1㎡** 분할에 따른 지번 정정
	변경	풍산읍 죽전리	324-1	답	213	213	공	안동시		
4	당초	풍산읍 죽전리	1339-6	전	191	16	국	기획재정부		분할에 따른 지번 정정
	변경	풍산읍 죽전리	1339-53	전	16	16	국	기획재정부		

일련번호	구분	토지소재지 읍면리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등기부상)	비고
5	당초	풍산읍 죽전리	1339-7	전	24	9	국	기획재정부		감)1㎡ 분할에 따른 지번 정정
	변경	**풍산읍 죽전리**	**1339-54**	**전**	**8**	**8**	**국**	**기획재정부**		
6	당초	풍산읍 죽전리	1339-8	전	178	14	국	기획재정부		분할에 따른 지번 정정
	변경	풍산읍 죽전리	1339-55	전	14	14	국	기획재정부		
7	당초	풍산읍 죽전리	1339-9	전	46	46	국	기획재정부		
8	당초	풍산읍 죽전리	1339-13	천	755	755	공	안동시		
	변경	풍산읍 죽전리	1339-13	천	755	755	안동시 광석1길 17	안동봉화축산업협동조합		
9	당초	풍산읍 죽전리	1339-14	천	102	2	국	국토교통부		분할에 따른 지번 정정
	변경	풍산읍 죽전리	1339-56	천	2	2	국	국토교통부		
10	당초	풍산읍 죽전리	1339-15	천	813	16	국	국토교통부		분할에 따른 지번 정정
	변경	풍산읍 죽전리	1339-57	천	16	16	국	국토교통부		

일련번호	구분	토지소재지 읍면리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등기부상)	비고
11	당초	풍산읍 죽전리	1339-17	천	916	75	국	국토교통부		분할에 따른 지번 정정
	변경	풍산읍 죽전리	1339-58	천	75	75	국	국토교통부		
12	당초	풍산읍 죽전리	1339-19	전	450	14	국	기획재정부		분할에 따른 지번 정정
	변경	풍산읍 죽전리	1339-59	전	14	14	국	기획재정부		
13	당초	풍산읍 죽전리	1339-20	전	22	22	국	기획재정부		
14	당초	풍산읍 죽전리	1339-22	전	122	122	국	기획재정부		
15	당초	풍산읍 죽전리	1339-23	전	69	68	국	기획재정부		분할에 따른 지번 정정
	변경	풍산읍 죽전리	1339-60	전	68	68	국	기획재정부		
16	당초	풍산읍 죽전리	1339-24	전	33	33	국	기획재정부		
17	당초	풍산읍 죽전리	1339-35	천	3,681	3,681	공	안동시		
	변경	풍산읍 죽전리	1339-35	천	3,681	3,681	안동시 광석1길 17	안동봉화 축산업 협동조합		

일련번호	구분	토지소재지 읍면리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등기부상)	비고
18	당초	풍산읍 죽전리	1339-36	천	3,310	3,282	공	안동시		분할에 따른 지번 정정
	변경	풍산읍 죽전리	1339-69	천	3,282	3,282	안동시 광석1길 17	안동봉화 축산업 협동조합		
19	당초	풍산읍 죽전리	1339-37	천	189	189	공	안동시		
	변경	풍산읍 죽전리	1339-37	천	189	189	안동시 광석1길 17	안동봉화 축산업 협동조합		
20	당초	풍산읍 죽전리	1339-38	천	320	320	공	안동시		
	변경	풍산읍 죽전리	1339-38	천	320	320	안동시 광석1길 17	안동봉화 축산업 협동조합		
21	당초	풍산읍 죽전리	1339-39	천	1,368	1,368	공	안동시		
	변경	풍산읍 죽전리	1339-39	천	1,368	1,368	안동시 광석1길 17	안동봉화 축산업 협동조합		
22	당초	풍산읍 죽전리	1339-40	천	686	686	공	안동시		
	변경	풍산읍 죽전리	1339-40	천	686	686	안동시 광석1길 17	안동봉화 축산업 협동조합		

일련번호	구분	토지소재지 읍면리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등기부상)	비고
23	당초	풍산읍 죽전리	1339-41	천	601	573	공	안동시		분할에 따른 지번 정정
	변경	풍산읍 죽전리	1339-61	천	573	573	안동시 광석1길 17	안동봉화 축산업 협동조합		
24	당초	풍산읍 죽전리	1339-42	천	822	818	공	안동시		분할에 따른 지번 정정
	변경	풍산읍 죽전리	1339-62	천	818	818	안동시 광석1길 17	안동봉화 축산업 협동조합		
25	당초	풍산읍 죽전리	1339-43	천	504	504	공	안동시		
	변경	풍산읍 죽전리	1339-43	천	504	504	안동시 광석1길 17	안동봉화 축산업 협동조합		
26	당초	풍산읍 죽전리	1339-44	천	2,812	2,804	공	안동시		분할에 따른 지번 정정
	변경	풍산읍 죽전리	1339-63	천	2,804	2,804	안동시 광석1길 17	안동봉화 축산업 협동조합		
27	당초	풍산읍 죽전리	1339-45	천	8,062	7,579	공	안동시		증)23㎡ 분할에 따른 지번 정정
	변경	**풍산읍 죽전리**	**1339-64**	**천**	**7,602**	**7,602**	**안동시 광석1길 17**	**안동봉화 축산업 협동조합**		

일련번호	구분	토지소재지 읍면리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등기부상)	비고
28	당초	풍산읍 죽전리	1339-46	천	346	313	공	안동시		분할에 따른 지번 정정
	변경	풍산읍 죽전리	1339-65	천	313	313	안동시 광석1길 17	안동봉화 축산업 협동조합		
29	당초	풍산읍 죽전리	1339-47	천	1,380	1,155	공	안동시		분할에 따른 지번 정정
	변경	풍산읍 죽전리	1339-67	천	1,155	1,155	안동시 광석1길 17	안동봉화 축산업 협동조합		
30	당초	풍산읍 죽전리	1339-48	천	442	264	공	안동시		**증)1㎡** 분할에 따른 지번 정정
	변경	**풍산읍 죽전리**	**1339-68**	**천**	**265**	**265**	**안동시 광석1길 17**	**안동봉화 축산업 협동조합**		
31	당초	서후면 대두서리	1070-2	천	5,496	4,920	공	안동시		분할에 따른 지번 정정
	변경	서후면 대두서리	1070-14	천	4,920	4,920	안동시 광석1길 17	안동봉화 축산업 협동조합		
32	당초	서후면 대두서리	1070-5	천	66	66	공	안동시		
	변경	서후면 대두서리	1070-5	천	66	66	안동시 광석1길 17	안동봉화 축산업 협동조합		

일련번호	구분	토지소재지 읍면리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등기부상)	비고
33	당초	서후면 대두서리	1070-6	천	6,013	5,968	공	안동시		분할에 따른 지번 정정
	변경	서후면 대두서리	1070-16	천	5,968	5,968	안동시 광석1길 17	안동봉화 축산업 협동조합		
34	당초	서후면 대두서리	1070-7	천	3,771	3,698	공	안동시		분할에 따른 지번 정정
	변경	서후면 대두서리	1070-17	천	3,698	3,698	안동시 광석1길 17	안동봉화 축산업 협동조합		
35	당초	서후면 대두서리	1070-8	천	301	285	공	안동시		분할에 따른 지번 정정
	변경	서후면 대두서리	1070-18	천	285	285	안동시 광석1길 17	안동봉화 축산업 협동조합		
36	당초	서후면 대두서리	1070-9	천	3,176	3,004	공	안동시		분할에 따른 지번 정정
	변경	서후면 대두서리	1070-19	천	3,004	3,004	안동시 광석1길 17	안동봉화 축산업 협동조합		
37	당초	서후면 대두서리	1070-10	천	2,883	2,121	공	안동시		감)272㎡ 분할에 따른 지번 정정
	변경	서후면 대두서리	1070-20	천	1,849	1,849	안동시 광석1길 17	안동봉화 축산업 협동조합		

일련번호	구분	토지소재지 읍면리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등기부상)	비고
38	당초	서후면 대두서리	1070-11	천	168	127	공	안동시		증)41㎡
	변경	**서후면 대두서리**	**1070-11**	**천**	**168**	**168**	**안동시 광석1길 17**	**안동봉화 축산업 협동조합**		
39	당초	서후면 대두서리	1070-12	천	73	48	공	안동시		증)25㎡
	변경	**서후면 대두서리**	**1070-12**	**천**	**73**	**73**	**안동시 광석1길 17**	**안동봉화 축산업 협동조합**		
40	당초	서후면 대두서리	1070-13	천	38	15	공	안동시		증)31㎡
	변경	**서후면 대두서리**	**1070-13**	**천**	**46**	**46**	**안동시 광석1길 17**	**안동봉화 축산업 협동조합**		

구미시 고시 제2018 - 271호

구미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구미시 오태동 산91-5번지 일원 구미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5일

구 미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해제입안 신청된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제를 통해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여 우선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체육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7	체육시설	골프연습장	구미시 오태동 산91-5 번지 일원	**구미시 오태동 산91-7 번지 일원**	26,745	**감)19,014**	**7,731**	구미시 고시 제2006-30호 (2006.6.19.)	

나.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7	체육시설	장기미집행시설 일부 해제 감) 19,014㎡	· 민간골프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는 제도적 정비에 부응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

3.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면 및 지형도면 : 도면게재 생략

4. 기타 서류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구미시청 도시과(☎054-480-5404)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

군위군 공고 제2018-638호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정리회전교차로~국도5호선 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계획(변경) 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관계서류의 열람을 실시하였으나, 토지조서의 변동이 있어 다음과 같이 재열람 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본 사업시행에 대한 의견이 있을시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5일

군 위 군 수

1. 실시계획 인가 내용

항 목	공 고 내 용	비 고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정리 34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 칭 : 정리회전교차로~국도5호선간 도로확포장공사	

항 목	공 고 내 용	비 고
3. 면적 또는 규모(변경)	• 면적 : 당초-24,408㎡, 변경-24,411㎡ • 규모 : L=750m, B=35m	지적측량(분할) 및 편입토지조서 변동에 따른 면적 변경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군위군수 • 주 소 :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	
5.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20.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 비치)	

※ 관계도면, 세부조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 비치)

2. 서류열람 및 의견제출

가. 열람장소 : 군위군청 도시새마을과

나. 열람기간 : 2018. 11. 06 ~ 2018. 11. 20(15일간)

다. 의견제출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열람기간 내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위군청 도시새마을과(☎054-380-62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군 공고 제2018 - 804호

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

성주군공인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 및 폐기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 11. 5.

성 주 군 수

□ **공인 폐기 및 신조사유 : 인증기 노후로 인한 교체**

□ **신조 공인 최초사용일 : 2018년 10월 26일**

□ **신조 공인명 및 인영**

공 인 명	규격 및 서체	인 영
민원사무벽진면장의인전용	2.1㎝ 정방형 한글전서체	

□ **폐기 공인명 및 인영**

공 인 명	규격 및 서체	인 영
민원사무벽진면장의인전용	2.1㎝ 정방형 한글전서체	

울진군 공고 제2018 - 1525호

울진 도시공원(어린이공원 : 부구제2공원) 공원조성계획(안) 공람 공고

울진군 북면 부구리 산7번지 일원에 위치한 군계획시설(어린이공원 : 부구제2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1. 5.

울 진 군 수

1. 공람기간 : 2018. 11. 5. ~ 11. 22. (국·공휴일 제외 14일 이상)

2. 공람장소 : 울진군 도시새마을과

3. 공람내용 : 울진 도시공원(어린이공원:부구제2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4. 울진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내용

가.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조서

번 호	공 원 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9	부구제2공원	어린이공원	북면 부구리 산7번지 일원	2,81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34호 (2015.7.13)	

나.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구 분	시 설 명	부 지		건 축 규 모		비 고
		면 적(㎡)	구성비(%)	바닥면적(㎡)	연면적(㎡)	
계		2,817	100.0	-	-	
도로 및 광장	도로, 광장	855	30.4	-	-	
유희시설	놀이터	239	8.5	-	-	
휴양시설	휴게마당, 파고라	90	3.2	-	-	
녹지		1,633	57.9	-	-	

5. 울진 도시공원(어린이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 게재 생략(공람장소 비치)

6. 주민 의견서 제출

- 제출기간 : 열람기간 내
- 제출방법 : 서면 제출(서식 공람장소 비치)

7.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 및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울진군청 도시교통새마을과(☏054-789-637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람(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며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2018년 11월 5일

경상북도교육규칙 제760호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사립유치원의「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적용대상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의 지정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제5조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신 설〉	20. 사립유치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적용대상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의 지정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립유치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적용대상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의 지정 업무를 교육장 위임 사무에 추가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2018년 11월 5일

경상북도교육규칙 제761호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성과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은 교육정책국장, 행정지원국장, 감사관, 정책과장, 총무과장이 된다.
2. 위촉직 위원은 3명 이내로 하되, 예산회계 및 교육재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규칙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3조(외부평가) 교육감은 예산성과금 지급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민간 전문기관에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 또는 그 지급 심사 결과에 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①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

회” 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며, 위원은 본청 소속 장학관 또는 사무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② 자체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자체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자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 심사

3.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준용) 위원회 및 자체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개정에 따른 주요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자체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보완

○ 상위법령과 중복되어 규정된 성과금의 지급신청 등에 관한 조항 삭제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2018년 11월 5일

경상북도교육규칙 제762호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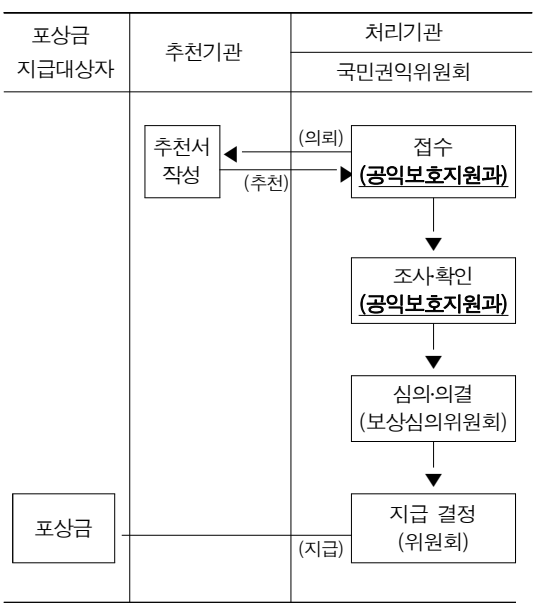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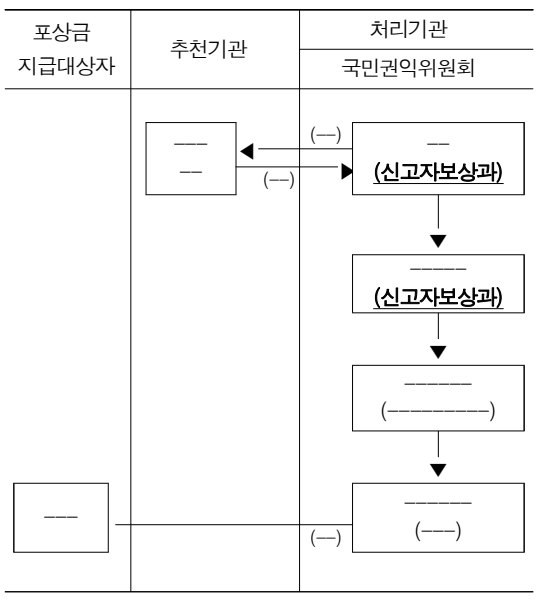
별지 제7호 서식 중 “3년”을 “5년”으로,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2년”을 “3년”으로,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9호 서식 중 “공익보호지원과”를 각각 “신고자보상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7호 서식]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별지 제7호 서식]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 – ---------- ---------- -------. ---------- -- **5년** ---------- **5천만원** ----------. ○ ---------- ----------. – ---------- ---------- ---------- ----- **3년** ---------- **3천만원** ----------.
[별지 제9호 서식] (뒤쪽)  	[별지 제9호 서식] (뒤쪽)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 「공익신고자 보호법」(법률 제15023호, 2017. 10. 31. 일부개정, 2018. 5. 1. 시행)의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직 개편에 따라 일부 서식(별지 제7호, 제9호 서식)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변경(별지 제7호 서식)

-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비공개 의무 규정 위반 시 벌칙 강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조치 금지 규정 위반 시 벌칙 강화(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서식 변경(별지 제9호 서식)

-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직개편에 따른 처리부서 변경

(공익보호지원과 → 신고자보상과)

경상북도 각급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2018년 11월 5일

경상북도교육규칙 제763호

경상북도 각급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

경상북도 각급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징수방법)”을 “(징수방법 및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징수하며”를 “현금 또는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납입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입학전형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2. 교육청(학교)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납부한 전형료 전액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전형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교육감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징수방법) ① 전형료는 지원서의 접수와 동시에 징수하며, 이 경우 교육비특별회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징수방법 및 반환) ① ---------- ------ 현금 또는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하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일단 납입된 전형료는 과오납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납입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입학전형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2. 교육청(학교)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납부한 전형료 전액
〈신 설〉	제4조(전형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현 행	개 정 안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교육감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경상북도 각급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0)」 권고 사항에 따라 권고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방법을 현금 외에 전자결제 방식이 가능하도록 개선

○ 입학전형료 반환에 대한 명시 규정 마련

- 입학전형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 교육청(학교)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납부한 전형료 전액

○ 입학전형료 면제에 대한 명시 규정 마련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교육감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2018년 11월 5일

경상북도교육규칙 제764호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근접지”라 함은 기존 근무지가 소재한 시·군과 경계가 닿아있는 시·군 또는 기존 임차 주택과 신규 근무기관과의 직선 거리가 50km이하인 곳을 말한다.

제7조제4항 중 “위원장은”을 “심의회는”으로, “경미하여 위원회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을 “경미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로 한다.

제16조 앞에 “제5장 전세자금 지원 사업”을 삽입한다.

제16조 앞에 “제6장 전세자금 지원 사업”을 삭제한다.

제16조제2항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는”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전입일이”를 각각 “임용일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보하여야”를 “알려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송부하고”를 “보내고”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통보하여야”를 “알려야”로 한다.

제20조제2항 본문 중 “가산하여”를 “더하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항제6호”를 “제1항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근접지로 전보된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 전세자금 상환 유예 신청서를 전보임용일부터 10일 이내에 기존 근무지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예기간은 기존의 전세자금 지원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 앞에 “제6장 기금관리의 방법”을 삽입한다.

제21조 앞에 “제7장 기금관리의 방법”을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호서식]

전세자금 상환 유예 신청서

신청내용	1. 대 부 금 액	일금 원 (₩)		
	2. 기 지 원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3. 전 보 임 용 일	20 년 월 일
	4. 유 예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5. 발령지 내 주택 소유 여부	
	6. 유 예 사 유			
인적사항	7. 전근무기관명		8. 현근무기관명	
	9. 성 명		10. 직 급(위)	
	11. 생 년 월 일			

위와 같이 전세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소속기관(부서)의 장 : (직인)

○○교육(지원)청교육감(장) 귀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근접지”라 함은 기존 근무지가 소재한 시·군과 경계가 닿아 있는 시·군 또는 기존 임차 주택과 신규 근무기관과의 직선 거리가 50km 이하인 곳을 말한다.
제7조(회의 등) ① ~ ③ (생 략)	제7조(회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하거나 경미하여 위원회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경미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
제6장 전세자금 지원 사업	〈삭 제〉
〈신 설〉	제5장 전세자금 지원 사업
제16조(지원신청) ① (생 략)	제16조(지원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전세계약대상 주택의 면적은 공동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85㎡이하로 한다. 다만, 단독주택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 경우는 ----------.
제17조(지원대상자의 선정) ① 전세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은 신청일 이전 주민등록을 재직 중인 기관의 소재지	제17조(지원대상자의 선정) ① ----------

현 행	개 정 안
로 이전하여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교육지원청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심의결과는 지체 없이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압류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시·군의 전입일이 빠른 교직원, 단 본청은 본청 전입일이 빠른 교직원	2. ---------- 임용일이 --- ---------- 임용일이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감은 전세자금 대부 지원대상자를 확정한 때에는, 이를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 - 알려야 --.
④ 교육장이 전세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전세자금 지원 및 송금통지서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이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 ---------- ---------- 보내고---------- ----.
제19조(지원 기간) ①·② (생 략)	제19조(지원 기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전세자금 대부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교육장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 ---------- ---------- ---------- 알려야 --.
제20조(자금의 상환) ① (생 략)	제20조(자금의 상환) ①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② 상환기한을 경과하여 전세자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기간(이하 “연체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기금계좌가 설치된 금융기관의 일반여신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가산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된 경우에는 지원받은 날로부터 상환 전일까지의 기간을 연체기간으로 한다.	② ---------- 더하여 ---------. ---- 제1항제6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근접지로 전보된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 전세자금 상환 유예 신청서를 전보임용일부터 10일 이내에 기존 근무지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예기간은 기존의 전세자금 지원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장 기금관리의 방법	〈삭 제〉
〈신 설〉	제6장 기금관리의 방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호서식] 전세자금 상환 유예 신청서 신청내용 1. 대부금액: 일금 원(₩) 2. 기지원기간: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3. 전보임용일: 20 년 월 일 4. 유예기간: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5. 발령지 내 주택 소유 여부: 6. 유예사유: 인적사항 7. 전근무기관명: / 8. 현근무기관명: 9. 성 명: / 10. 직 급(위): 11. 생년월일: 위와 같이 전세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소속기관(부서)의 장 : (직인) ○○교육(지원)청교육감(장) 귀하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 기존 근무지 임차 주택에서 통근 가능한 근접지로 전보되어 임차 계약을 계속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세자금 상환조건에 해당되어 상환해야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함

○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명백하지 않은 용어 또는 띄어쓰기 수정, 원래 의미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불필요한 표현 생략을 통해 알기 쉬운 법령을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근접지 전보자에 대해 상환 유예를 하기 위한 근접지 용어를 신설함

○ 근접지 전보자 상환 유예 절차를 신설함

○ 상환 유예를 위한 전세자금 상환 유예 신청서 서식 별지 제7호서식 신설

○ 법제처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교육감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안동소방서 공고 제2018-12호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공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로 선정되었음을 공표합니다.

2018. 11. 5.

안 동 소 방 서 장

1. 안전관리 우수업소의 명칭과 다중이용업주 이름

우수업소 명칭	주 소	영업주	업 종	비고
쇼미동전 노래연습장	경상북도 안동시 경북대로 418 테마프라자 A동 305호(옥동)	엄누리	노래연습장	-

2. 안전관리 우수업무의 내용

가. 최근3년 동안『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음.

나.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법령위반 사실이 없음

다.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음

라.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음

3.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기간

○ 2018. 10. 31. ~ 2020. 10. 30.

상주소방서 공고 제2018 - 19호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공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안전관리 우수업소표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안전관리 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예정 공고 이후이의신청이 없어 최종적으로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었음을 공표합니다.

2018년 11월 5일

상 주 소 방 서 장

1. 표지사용기간 : 2018. 10. 31 ~ 2020. 10. 31

2. 대 상

우수업소 명칭	주 소	영업주 (대표)	업 종	비고
산타페 노래연습장	경북 상주시 삼백로 138 (상주시 서문동 20-5)	백호욱	노래연습장	신규

3. 안전관리우수업소의 내용

○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폐쇄 · 훼손 등 유지관리 우수

○ 최근 3년 동안 소방 · 건축 · 전기 및 가스관련법령 위반사실 없음

○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 없음

○ 자체계획에 의거 종업원에 대한 정기적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이행

공 고

울진소방서 공고 2018 – 12호

소방안전관리자 법정실무교육 미이수자 업무정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8. 11. 5.

울 진 소 방 서 장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정지 대상자 현황(3명)**

성명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명	주소(소재지)	자격구분 (번호)	기 간
이의연	리버사이드빌	경상북도 울진군 성류굴로 9	점검위탁 감독자	2018. 10. 31.~ 실무교육 이수 시까지
정동철	보운주택 건설건물	경상북도 울진군 월변7길 6	점검위탁 감독자	2018. 10. 31.~ 실무교육 이수 시까지

성명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명	주소(소재지)	자격구분 (번호)	기 간
조학형	시선호텔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중앙로 236-4	2급소방안전관리자 1981-03-22-1-1 06239	2018. 10. 31.~ 실무교육 이수 시까지

새바람 행복 경북!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름 청렴세상